



### 화학물질관리법

[시행 2018.1.18.] [법률 제14532호, 2017.1.17., 타법개정]

환경부(화학안전과-영업허가, 교육, 도급) 044-201-6832, 6836

환경부(화학안전과-화학사고) 044-201-6838, 6839

환경부(화학안전과-장외영향평가, 위해관리계획) 044-201-6843, 6833

환경부(화학안전과-수입, 확인명세서) 044-201-6835, 6848

환경부(화학안전과-취급시설기준) 044-201-6837, 6844

**제42조(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)**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 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**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**하여야 한다.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5.29.>

1.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**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**
2. 화학사고 발생 시 **대기·수질·지하수·토양·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**
3. 화학사고 발생 시 **조기경보 전달방법,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**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, 개별설명,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5.29.>

④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5.29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5.29.>